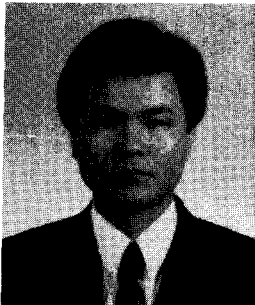


특집

技術金融의 制度的 確立과 發展方向 (2)

본 원고는 KST
정책기획본부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으로
2회에 나누어서 게재합니다.

[편집자]



金 宣 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기술정책실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서울시청 시정연구단 전임연구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강사
미국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미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다. 技術金融의 量的 供給體系

— 技術開發銀行(가칭)의 設立 —

1) 技術金融 窓口 一元化의 必要性

현재 技術開發에 관련된 政府의 재정자금과 기금의 규모는 1兆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지원이 一般市中銀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금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음을 前述한 바 있다. 부연하면 기술개발자금이 여타의 자금과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금의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출심사에서도 일반적 대출관행을 적용하여 담보능력만 심사하여 수수료의 「꺼기」를 부과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기술개발자금의 「質」은 이러한 대출제도 및 공급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政府의 정책자금의 취급이 여러 시중은행에 분산된 결과 貸出審査의 전문성을 꾀할수도 없었으며 막대한 자금은 政府의 政策意志와 다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은 전문성을 갖춘 하나의 금융기관이 국가적 科學技術 및 產業政策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全擔하 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기술개발 相關 政策資金과 補助金を 합하면 5千億원에 달하고 2001년 민간의 기술금융수

요가 2兆원에 달할 것으로 목표하는 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흐름은 전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자금은 다수의 시중 은행들이 관리함으로 발생하는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物價, 雇傭, 金利 등 경제지표와의 면밀한 관계를 고려한 경제정책적 조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본다. 여기서 조정이란 기술금융을 한단위로 묶어 또다른 政策金融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자율적 금융을 보장하면서 금융산업과 경제에 미칠 負의 波及效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술금융의 새로운 공급체제는 기존의 정책금융을 金融自律化에 발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 제도적 틀을 이러한 관점에서 構想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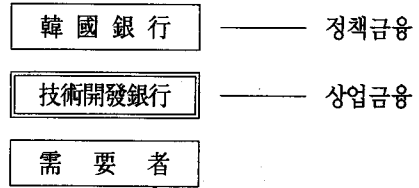
2) 技術金融 支援 體系

技術金融 창구의 일원화는 기술개발자금 전달 금융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며 그 전달기관은 住宅銀行과 같이 특수은행으로 가칭 “技術開發銀行”이라 칭한다. 技術開發銀行은 公共的 성격인 政策金融과 事業的 성격의 기술금융을 병행하여 운용하게 하여야 하며 그 位相은 다음의 두가지 代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第1案) 資金의 代理貸出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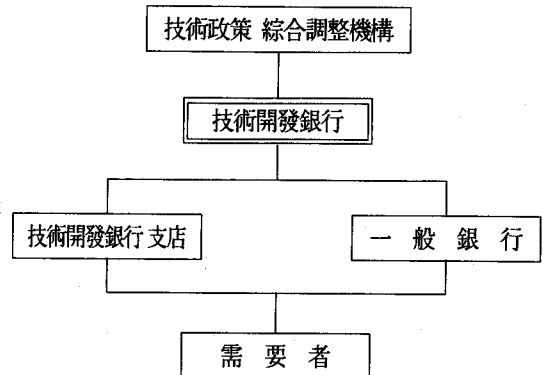
本 案은 기술개발에 관련된 재정자금과 기금의 관리를 韓國銀行에 맡기고 기술개발은행은 韓銀으로부터 轉貸 또는 借入形式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의 대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구만 일원화한 것이다. 이 案의 장점은 政策金融과 商業金融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貸出과 事後管理에 효

율적일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초기단계에 기술개발은행의 상업금융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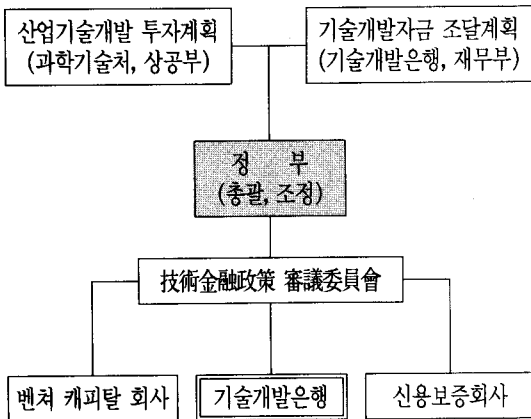
(第2案) 技術金融에 있어서 中央銀行으로서의 역할

이 案은 技術開發銀行이 技術開發에 관련된 모든 재정자금과 기금을 관리하여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代理 또는 委託貸出하는 방안이다. 즉 技術開發銀行이 技術金融에 있어서 中央銀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되며 정부의 종합적 技術政策과의 연계를 위하여 은행과 政府間에 조정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은행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 機構은 은행으로서 담당하기 어려운 자금이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의 방침을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案의 장점은 방대한 정책금융과 상업베이스 금융의 동시관리로 중복투자의 배제등 대출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기할 수 있으나 다만 規模의 經濟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의 두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技術開發銀行의 位相은 기술금융 지원체계의 전문성 즉, 外的 專門化와 內的 專門化의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겠다. 外的 專門化란 기술금융이 전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종합적 계획에 따라 기타 産業 및 經濟政策들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內的 專門化란 자금의 조달, 운용 그리고 대출심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일컫는다.

우선 외적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부와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장기투자계획과 장기적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巨視的 틀속에서 기술개발은행은 타 은행과는 다른 전문적 대출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 기술금융의 外的 정책환경과 내적 운영의 조정과 조화를 위해 住宅金融의 住宅政策 審議委員會와 동등한 위상으로 技術金融政策 審議委員會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회는 산업계와 금융계, 학계 그리고 행정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科學技術處 산하에 설치하고 기술금융의 거시적 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케 한다.



〈그림 5〉 技術金融 支援 體系

라. 技術開發預金制度의 施行

— 擔保金融에서 信用金融으로의 轉換 —

1) 賦金 및 積金貸出制度의 도입과 信用貸出

아무리 풍부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은행 등 공급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中小企業의 접근성이 낮을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즉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관행대로 擔保가 없으면 아무리 유망한 기술일지라도 대출받지 못하는 현실이 技術開發銀行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擔保力이 없는 중소기업은 자연히 소외되고 대기업 중심의 또 다른 대출창구가 형성된다는 의미 밖에 없다. 현재 시중은행은 전체 자금운용의 45%, 지방은행의 80% 이상을 中小企業에 대출토록 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서류상의 의미비율 달성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강제 의무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기술개발은행이 대출자금 回收可能性을 무시하고 대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擔保問題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다음의 몇가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개발은행은 다양한 金融商品을 개발하여야 하겠지만 그중 技術開發賦金制度和 技術開發積金制度를 시행하여 多年間 기업으로 하여금 信用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기업이윤의 일정액을 拂入케 하고 기술개발시에 그동안 쌓인 신용에 따라 무담보 혹은 낮은 담보액으로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법인세 감면 혜택과 연계할 경우 더욱 큰 호응을 얻을 것이며 기술개발은행의 財源調達에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技術開發預金制度는 자금조달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의 지원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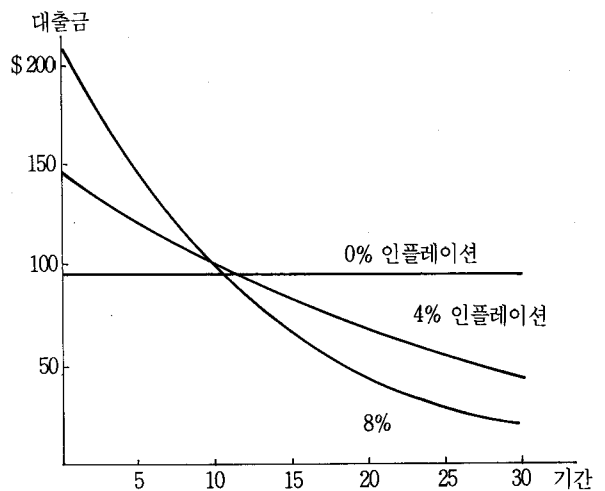
또한 현재 시중은행에서 부분적으로 「꺾기」의 수단으로 적용되어 온 積金加入附 貸出制度를 개선하여 이를 利差補填方式으로 운용하는 대안이 있겠다. 적금가입에 의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技術開發銀行은 자금의 회수위험도를 분산시켜 까다로운 담보조건을 요구치 않아도 될 것이며, 기업 역시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信用을 쌓을 수 있어 다음 대출때 信用貸出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은 技術開發賦金으로 신용을 쌓아 장래의 대출을 준비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은 技術開發積金으로 신용을 갖출 때 점차 우리의 금융사회는 선진국의 금융사회로 변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中小企業의 擔保問題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듯 대출 과정에서 擔保問題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기술의 성격에 따른 대출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R의 보조금 협상안과 GATT補助金 相計關稅 협정안에 따르면 수출보조금 지급, 국산 품사용촉진을 위한 세금지원, 수출지원금융, 산업 구조조정과 신기술 기업화에 대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적 지원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의 보복을 받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연구·기술개발 등의 일반적인 機能的 支援으로 지원의 방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기술개발적금이나 부금등을 통한 기업 自救努力이 앞으로 다칠 국제적 규정환경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2) 積金貸出制度의 運用方案

技術金融에의 積金가입부 대출제도는 前述한

技術金融供給體系의 確立에서와 같이 利差補填制度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꺾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 割賦金의 산정에 있어 전문적인 연구가 先行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효율화는 물론 경제전체에 미치는 負의 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자율의 騰落으로 여타 자금보다 대출기간이 장기적인 기술금융의 需要와 供給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적금의 이자율이 11.5%에 固定되어 있으므로 예를들어 100원의 주택자금을 2년 대출하였다면, 매년 인플레이션율을 10%로 상정했을 때 만기에 원금 100원의 실질가치는 81원에 불과하고 은행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實質價値로 90원 정도만 회수하는 것이 된다. 즉 다음 그림에서 보듯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의 실질가치는 기간이 경과할 수록 더욱 하락하여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인플레이션율이 이자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6〉 割賦金의 實質價値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기술금융의 需要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인플레이션과 그 기대는 이자율과 割賦金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을 만큼 높일 것이며 이는 곧 할부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할부금의 증가는 實質購買力으로 볼 때 곧 借主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割賦金의 증가는 당시 적금가입자의 초기년도 상환금부담을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적금가입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대출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융수요 감소효과는 다음 表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표 6〉 인플레이션과 할부금 부담의 변동

(대출금 20,000원, 대출기간 30년, 기업소득 10,000원)

	대출기간	연간 할부금	할부금 실질가치	할부금/소득
Case 1	0% 인플레이션, 3% 명목이자율의 경우			
	1	1,020.39	1,020.39	10.0%
	10	1,020.39	1,020.39	8.3%
	20	1,020.39	1,020.39	6.9%
	30	1,020.39	1,020.39	5.6%
Case 2	2% 인플레이션, 5% 명목이자율의 경우			
	1	1,301.02	1,275.52	12.5%
	10	1,301.02	1,067.30	8.8%
	20	1,301.02	875.56	5.9%
	30	1,301.02	718.26	4.0%
Case 3	4% 인플레이션, 7% 명목이자율의 경우			
	1	1,611.73	1,549.74	15.2%
	10	1,611.73	1,088.83	9.0%
	20	1,611.73	735.57	5.0%
	30	1,611.73	496.93	2.8%

註: 기업소득은 매년 2%의 실질성장을 가정하였음.

위와 세가지 경우를 상정했을 때 企業所得 對 比 할부금의 비율을 보자.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수록 初期年度의 할부금 비중에 더욱 높아지고 滿期가 도래했을 때의 부담은 더욱 낮아짐을 알 수 있다.

Case 1에서는 제로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으므로 할부금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Case 2와 Case 3에서 각각 2%와 4%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초기할부금의 실질가치는 Case 1보다 높으나 만기에 도달했을 때는 반대로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 割賦金 制度의 比較

기 간	1 期	2 期	3 期	4 期
실질이자율	3%	3%	3%	3%
인플레이션	3%	5%	5%	4%
명목이자율	6%	8%	8%	7%

일반할부금제도

잔여원금	20,000	19,747	19,479	19,195
이자지급액(%)	1,200	1,185	1,169	1,152
명목할부금	1,453	1,453	1,453	1,453
실질할부금	1,453	1,411	1,343	1,280

상환금 변동제도

잔여원금	20,000	19,747	19,557	19,351
이자지급액	1,200	1,580	1,565	1,355
명목할부금	1,453	1,770	1,770	1,614
실질할부금	1,453	1,718	1,636	1,422

물가적용제도

잔여원금	20,000	20,180	20,742	21,296
이자지급액(3%)	600	605	622	639
명목할부금	1,020	1,051	1,105	1,162
실질할부금	1,020	1,021	1,022	1,023

註: 계산의 간편화를 위하여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하였다.

住宅金融에 있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할부제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 Lessard, Aderson, Cukierman등에 의해 6개국의 경험이 정리되어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상환금 변동제도(Variable-rate mortgage)를, 스웨덴은 상환금 변동제도의 변형을, 브라질과 이스라엘은 물가적응제도(Price-level-adjusted mortgage), 핀란드는 물가연동제와 명목이자율 변동제의 중간형태를 각각 취하고 있다.

상환금 변동제도(Variable-rate mortgage)는 매 기간 일정액의 할부금을 납부하나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실질상환금을 다시 계상하여 이를 변제할 때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滿期가 일정하지 않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초기의 과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 실질할부금의 변동에는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물가적응제도(Price-level-adjusted mortgage)는 매기간 물가상승 기대치를 감안하여 실질이자율로 할부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할부가입자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먼저 실질할부금의 변동이 거의 없어 예측을 가능하게해 주며, 자금수요자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위험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표 23>에서 일반할부제와 상환금 변동제도, 물가적응제도를 비교해 본다.

3. 技術金融의 利率 運營方案

- 連動金利制度의 提案 -

가. 技術投資와 利率 및 인플레이션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은 높은 이자율과 이자율의 급격한騰落을 수반하여 왔다. 이들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의 投資活動 뿐 아니라 金融費用증대에 의한 國際競爭力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高金利下에서 기업은 만성적 資金不足에 시달려 왔고 設備資金과 運轉資金의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技術投資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었다.

한편 技術개발에 관련된 정부의 자금은 금리가 5~10%로 고정되어 있어 당시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세금리의 변동과 無關하여 反景氣調節의 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期待值가 높아 실세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의 각종 자금은 비교적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자금수요가 많아지므로 통화량이 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이들 자금의 규모가 적어 전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2001년 技術개발자금이 2兆에 달할 경우 이 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至大하다할 것이다. 또한 逆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실세금리가 낮을 경우 정부의 재정자금은 選好對象이 되질 못하고 자금이 技術투자로 유입되지 못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金融通貨委員會에서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재할인율 등 公金利를 조정하기는 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없다. 또한 金融自律化에 따라 모든 金利가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時代에 중앙은행에 의한 金利運用은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 하루빨리 技術금융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만 한다.

이 以外에도 현재의 固定金利制度가 경제에 미치는 負의 효과는 連動金利制度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나. 固定金利制度와 連動金利制度

여기서 固定金利制度란 현재와 같이 國民投資